

개인형IRP 핵심설명서

(금융감독원 배포, 전금융기관 공통)

| <p>수수료 부과</p> | <p>◇ 개인형IRP 계좌에는, 대상기간 중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아래의 수수료율(정수일 전일자 평가금액에 해당하는 구간의 수수료율)을 곱하여 운용·자산관리수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395 398 1474 913">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th> <th colspan="2">대면개설시 연간 수수료율</th> <th colspan="2">온라인개설시 연간 수수료율</th> </tr> <tr> <th>운용관리수수료율</th> <th>자산관리수수료율</th> <th>운용관리수수료율</th> <th>자산관리수수료율</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회사부담금 (퇴직금)</td> <td>5천만원 미만</td> <td>연 0.25%</td> <td>연 0.20%</td> <td>연 0.15%</td> <td>연 0.20%</td> </tr> <tr> <td>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td> <td>연 0.25%</td> <td>연 0.20%</td> <td>(수수료 면제)</td> <td>(수수료 면제)</td> </tr> <tr> <td>1억원 이상</td> <td>연 0.20%</td> <td>연 0.18%</td> <td>(수수료 면제)</td> <td>(수수료 면제)</td> </tr> <tr> <td rowspan="3">개인부담금</td> <td>5천만원 미만</td> <td>연 0.08%</td> <td>연 0.20%</td> <td>연 0.03%</td> <td>연 0.20%</td> </tr> <tr> <td>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td> <td>연 0.08%</td> <td>연 0.20%</td> <td>연 0.03%</td> <td>연 0.20%</td> </tr> <tr> <td>1억원 이상</td> <td>연 0.06%</td> <td>연 0.18%</td> <td>연 0.03%</td> <td>연 0.18%</td> </tr> </tbody> </table> <p>* 개인형IRP에는 고객이 자기부담으로 납입할 수도 있고, 퇴직 후 퇴직금(퇴직급여)을 납입할 수도 있음 ** 기타 수수료 할인 조건 및 연금수령단계 수수료율은 운용·자산관리약관(계약서)에서 확인 가능함 ※ 금융회사별 수수료 비교는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an.fss.or.kr)에서 확인가능함 ◇ 이와 별개로, 고객이 적립금을 펀드로 운용할 경우에는 해당 운용 금액에 대해 펀드 보수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보수는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또는 자산관리약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p> | 구분 | | 대면개설시 연간 수수료율 | | 온라인개설시 연간 수수료율 | | 운용관리수수료율 | 자산관리수수료율 | 운용관리수수료율 | 자산관리수수료율 | 회사부담금 (퇴직금) | 5천만원 미만 | 연 0.25% | 연 0.20% | 연 0.15% | 연 0.2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연 0.25% | 연 0.20% | (수수료 면제) | (수수료 면제) | 1억원 이상 | 연 0.20% | 연 0.18% | (수수료 면제) | (수수료 면제) | 개인부담금 | 5천만원 미만 | 연 0.08% | 연 0.20% | 연 0.03% | 연 0.2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연 0.08% | 연 0.20% | 연 0.03% | 연 0.20% | 1억원 이상 | 연 0.06% | 연 0.18% | 연 0.03% | 연 0.18% |
|--------------------------|---|----------|----------|---------------|----------|----------------|--|----------|----------|----------|----------|-------------|---------|---------|---------|---------|---------|----------------|---------|---------|----------|----------|--------|---------|---------|----------|----------|-------|---------|---------|---------|---------|---------|----------------|---------|---------|---------|---------|--------|---------|---------|---------|---------|
| 구분 | | | | 대면개설시 연간 수수료율 | | 온라인개설시 연간 수수료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용관리수수료율 | 자산관리수수료율 | 운용관리수수료율 | 자산관리수수료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사부담금 (퇴직금) | 5천만원 미만 | 연 0.25% | 연 0.20% | 연 0.15% | 연 0.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연 0.25% | 연 0.20% | (수수료 면제) | (수수료 면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억원 이상 | 연 0.20% | 연 0.18% | (수수료 면제) | (수수료 면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부담금 | 5천만원 미만 | 연 0.08% | 연 0.20% | 연 0.03% | 연 0.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연 0.08% | 연 0.20% | 연 0.03% | 연 0.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억원 이상 | 연 0.06% | 연 0.18% | 연 0.03% | 연 0.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중도해지 세제</p> | <p>◇ 고객이 자기부담으로 납입한 금액은 연말 세액공제(13.2~16.5%)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공제액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p> <p>*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과세</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연금수령 조건</p> | <p>◇ ① 만 55세 이상으로 ②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시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연간 수령액은 소득세법(시행령 40조의2)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수령해야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p> <p>* 단, 퇴직금이 입금된 개인형IRP계좌는 만 55세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연금수령이 가능</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연간 납입한도 설정</p> | <p>◇ 소득세법상(시행령 40조의2) 연간 자기부담금 납입한도를 최대 1,800만원*까지 설정(모든 금융회사 의 IRP 및 연금저축계좌를 합산)할 수 있으므로, 계좌당 납입한도를 너무 높게 설정할 경우에는 다른 연금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연말 세액공제를 받는 기준 금액은 900만원인 반면, 고객이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800만원임</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적립금 운용</p> | <p>◇ 고객이 적립금에 대해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리가 낮은 대기성 자금(고유계정대)으로 운용됩니다.</p> <p>◇ 운용상품 교체·해지·계약이전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 전에 매도할 경우에는 만기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p> <p>◇ 마찬가지로, 일부 펀드 상품(특히, 만기가 정해진 펀드)은 편입한 후 단기간내(예: 2년)에 환매할 경우에는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및 환매수수료율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인형IRP 핵심설명서

상품개요

- 개인형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이 노후소득 확보와 연말정산 세액공제(연간 900만원 한도) 혜택을 위하여 개인자금(이하 '개인부담금'이라 함)을 연간 최대 1,800만원 한도로 납입하거나,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퇴직금)을 이전하여 연금수급시점까지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계좌 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정기예금,펀드 등)으로 운용 지시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필요 시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 가입대상 | 가입대상 확인서류 |
|--|---|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 퇴직연금가입사실확인서(DB,DC,기업형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하나은행 퇴직연금 가입자인 경우 서류 제출 생략 |
|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 퇴직연금가입사실확인서 및 퇴직급여 입금 확인 서류(과세이연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번호 명시 확인),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산재보험가입확인서 중 1가지 서류 제출 |
|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가입자*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중 1가지 서류 제출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등 |

납입한도

- 퇴직급여 일시금(퇴직금) : 한도 제한 없음
- 개인부담금 : 연간 1,800만원, 전 금융기관 연금계좌*와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계좌당 납입한도를 너무 높게 설정할 경우 다른 연금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ISA(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일로부터 60일 내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ISA 계좌 만기일 기준 잔액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 가능하나, 세액공제한도는 별도 산정기준에 따름]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세제혜택

개인부담금 납입 부분에 대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 한도로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전 금융기관 연금계좌 합산 : (예시) 연금저축계좌로 최대 한도 600만원으로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 개인형IRP계좌로 추가 300만원 세액공제 가능

| 소득 | 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②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①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②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
| 공제율 | 16.5%(지방세 포함) | 13.2%(지방세 포함) |
| 세액공제액 | 최대 1,485,000원 (900만원 X 16.5%) | 최대 1,188,000원 (900만원 X 13.2%) |

※ ISA계좌 만기 자금 납입 시 세액공제 한도 확대
연간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 ISA계좌 만기자금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해지일, 계약이전일 또는 계약종료일까지
- 적립기간 : 계약체결일 ~ 연금지급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연금지급신청이 없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해지일까지)
- 연금지급기간 : 연금지급기준일로부터 종료일(최종 연금지급일), 계약해지일 또는 계약이전일까지
- ※ 중도해지의 경우 일부 해지는 불가하며, 개인부담금 납입 부분에 대하여 기타소득세(16.5%)를 부과 (상세내용은 “적용세율” 부분의 표 참조)됩니다.
- ※ 해지 신청 시 운용 중인 모든 상품이 매도 완료되어야 해지 가능하며, 운용 중인 상품에 따라 해지소요일수는 다릅니다.



적용세율

연금 수령 또는 일시금 수령(중도인출, 해지 포함) 시 아래와 같이 적용

| 구분 | 연금 수령 | 일시금 수령 (중도인출, 해지 등) |
|-----------------------|---|----------------------|
| 퇴직급여 일시금 (퇴직금) | 퇴직소득세 X 70% 수령기간 10년 초과 부분 : 퇴직소득세 X 60% 수령기간 20년 초과 부분 : 퇴직소득세 X 50% | 퇴직소득세 X 100% |
| 세액공제 받은 개인부담금 & 운용수익* | 연금소득세(연령에 따라 차등, 지방세 포함) 70세미만 5.5%, 70세이상 4.4%, 80세이상 3.3% | 기타소득세 16.5% (지방세 포함)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원금 | 비과세 | 비과세 |

(*)연금소득세 발생 부분에 대하여 사적 연금수령 연간 **1,5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 ① 이연퇴직소득 : 이연퇴직소득세 X 70%
- ② 그 외(소득/세액공제 적용 원금 및 총운용수익) : 연령에 따라 3.3~5.5%(연금소득세)
 - 부득이한 사유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3개월이상 요양(비용증빙), 파산/회생, 천재지변 및 사회 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등

상품이용

-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가입자가 지정한 방법(정기예금, 수익증권 등)으로 운용 가능합니다.
- 상품의 매입/매도(이하 '매매'라 함) 신청 시 거래일이 다음 영업일로顺延되어 처리됩니다. (매매 처리顺延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다음 영업일에 고시된 금리 적용)
- 상품에 따라 매매에 소요되는 영업일이 다르므로 매매 완료일을 고려하여 상품 매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품이 매도 완료되어야 계좌 해지가 가능합니다. (정기예금 : 1~2영업일 / 수익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 개별 상품 투자설명서 매매 기준일 +1영업일)
- 아래의 상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상품별 상품설명서, 약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p>정기예금 (이율보증형 보험 포함)</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DC,IRP)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저축은행 정기예금의 투자한도는 저축은행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1억원까지이며, 다른 금융기관 및 복수로 퇴직연금(DC,IRP) 거래가 있는 경우 가입자 본인이 전금융기관을 합산하여 저축은행별 투자한도를 초과하지않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 - 운용 상품 변경·계약이전·중도인출·계좌 해지 등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 전에 매도할 경우에는 만기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 <p>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등)</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성향분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절차에 따라 가입합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상품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 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서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따라 원리금보장 운용 방법과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외의 투자비중은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수익증권 매매 시 개별 투자설명서상 기준가 적용 시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기준가 적용 시간은 익영업일로顺延되어 적용됩니다.(투자설명서 기준가 적용일자 + 1영업일) |

중도인출

법에서 정하는 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일부 또는 전부인출가능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임차 보증금,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상환하는 경우 등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수령

자격 요건

- 개인부담금만 입금된 개인형IRP : 만 55세 이상&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시 연금 신청 가능
- 퇴직급여 일시금(퇴직금)이 입금된 개인형IRP : 만 55세 이상 충족 시 연금 신청 가능

연금수령 방법

- 수령방식 : 기간지정/금액지정/자유인출 방식 중 택1
- 수령기간 : 10년(단, 2013.3.1 이전 가입한 계좌의 경우 5년)

- 연간 연금수령한도 : $\frac{\text{매년 1월 1일(연금개시연도는 개시신청일) 평가 금액}}{11-\text{연금수령연차}^1)} \times 120\%$

1)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 (단, 2013.3.1 이전 가입한 경우 연금수령요건을 갖춘 해를 6년차로 기산)

수수료

매년 계약응당일(최초 적립금 입금일자) 또는 지급일에 적립금에서 차감 징수

청구수수료 = 평잔[직전 계약응당일(지급일) ~ 당해년도 계약응당일(지급일) 전일까지] X 수수료율 (당해년도 계약응당일 전일자 평가금액의 해당 수수료율)

*()는 비대면채널에서 개설시 적용수수료

| 구분 | | 운용관리수수료 | 자산관리수수료 | 합계 |
|----------------|-------------------|-----------------|-----------------|-----------------|
| 회사부담금 (퇴직금) | 5천만원 미만 | 연 0.25%(0.15%) | 연 0.20%(0.20%) | 연 0.45%(0.35%) |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연 0.25%(수수료 면제) | 연 0.20%(수수료 면제) | 연 0.45%(수수료 면제) |
| | 1억원 이상 | 연 0.20%(수수료 면제) | 연 0.18%(수수료 면제) | 연 0.38%(수수료 면제) |
| 개인부담금 | 5천만원 미만 | 연 0.08%(0.03%) | 연 0.20%(0.20%) | 연 0.28%(0.23%) |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연 0.08%(0.03%) | 연 0.20%(0.20%) | 연 0.28%(0.23%) |
| | 1억원 이상 | 연 0.06%(0.03%) | 연 0.18%(0.18%) | 연 0.24%(0.21%) |

- 1) **비대면 신규 면제** : 비대면 신규 & 퇴직금 5천만원 이상 손님, 회사부담금(퇴직금) 수수료 전액 면제
- 2) **연금수령 시 면제** : 연금개시 등록 후 1회 이상 연금 수령 시 수수료 전액 면제
- 3) **산재보험 장애연금 수급자 면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장애연금 또는 장애일시금 수급자 수수료 전액 면제
- 4) **장기계약 할인** : 계약경과년수에 따라 할인을 적용
-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5차년도 15%, 6~7차년도 18%, 8차년도 이상 20%
- 5) **장애인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확인 시 할인을 50% 적용
- 6) **청년가입자 할인** : 만 19~34세 가입자에게 청구되는 수수료에 대해 할인을 70% 적용
- 7) 퇴직급여제도에서의 이전된 퇴직급여 일시금(퇴직금)이 최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지 신청한 경우 해당기간의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 면제(계약이전 및 중도인출시 미적용)
- 8) 개인형IRP 사전지정운용제도 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적극투자형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한 운용손익수수료 부과
운용손익수수료 = 기본수수료(운용관리수수료율의 80% 적용) ± 손익수수료(운용관리수수료율의 20%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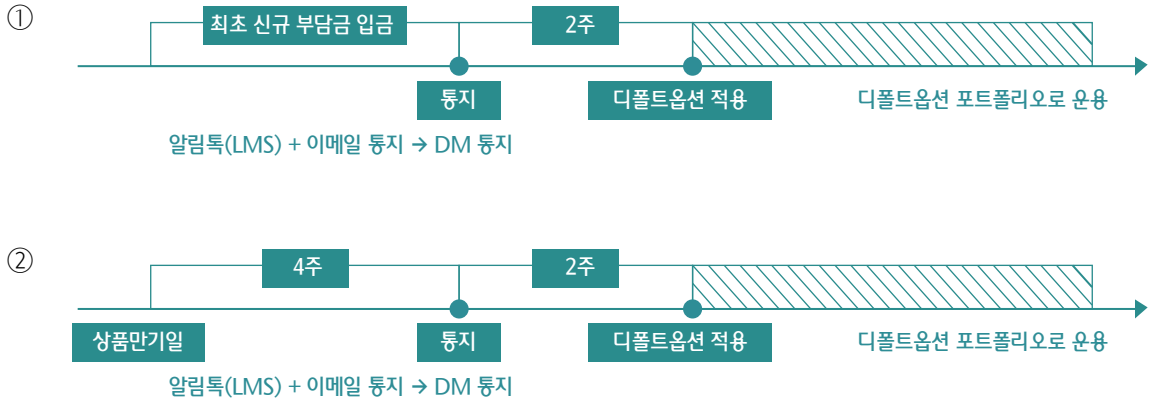
| 기준지표* 대비 성과구간 | 수수료 부과방법 | 적용 수수료율 |
|--------------------------|------------------|---------------|
| 각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기간수익률 > 기준지표 | 기본수수료 + 손익수수료 부과 | 운용관리수수료율 100% |
| 각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기간수익률 = 기준지표 | 기본수수료 부과 | 운용관리수수료율 80% |
| 각 사전지정운용방법의 기간수익률 < 기준지표 | 기본수수료 - 손익수수료 부과 | 운용관리수수료율 60% |

* 기준지표(2,5,8,11월 하나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 공시하여 적용) :
[전분기 공시된 안정형 사전지정운용방법 수익률 X 개별 사전지정운용방법 주식 외 비중] +
[KOSPI 과거 10년간 동안 매일 3년의 수익률 평균값 X 개별 사전지정운용방법 주식 비중]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

- 퇴직연금 적립금 납입 또는 퇴직연금에서 운용 중인 상품이 만기가 되었으나, 가입자의 상품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신규 가입 시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경우, 최초 부담금 납입 이후에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에 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 통지 후 2주 이내에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지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이 운용됩니다.
- 상품만기일로부터 4주를 기다려도 고객님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고객님 앞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이 적용됨을 통지. 통지 후 2주가 지나도 운용지시가 없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적용됩니다. 연속된 동일한 상품의 만기도래시에는 최초 1회만 6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관련 안내]

1. 입금예정상품을 지정하지 않고 적립금을 납입하였을 때로부터 2주 이내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상품)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만기가 있는 상품(정기예금, GIC 등)으로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해당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만기일로부터 4주가 지난 시점까지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으면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2주 이내 별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만기 자금을 운용합니다. 이 경우 통지는 알림톡, 이메일로 발송되며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적으로 DM으로 발송됩니다.
2. 적립금 납입일 또는 상품 만기도래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상품)으로 매수되는 시점까지 만기 자금은 금리가 낮은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됩니다.
3. 가입자는 언제든지 법에 따라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주간의 대기기간동안 가입자는 본인이 원하는 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할 수 있으며,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으로 운용 중인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여 다른 상품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4. 정기예금이 포함된 경우 만기일 이전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으로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5.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운용될 경우 가입자가 운용하고 있는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위험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운용관리계약서 및 자산관리신탁계약서, 가입 상품별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하나은행 퇴직연금 전용 고객센터(1599-208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